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가단513210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9. 6. 11.

판결 선고 2019. 7. 2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5,836,368원 및 그 중 95,836,339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2019. 6. 1. 이후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외에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8. 4. 3.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4. 4. 접수 제659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A과 피고 B에게 각 1/2의 비율로 배분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7. 1. 1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9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1. 19.(이후 보증기한은 2019. 1. 18.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이후부터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A이 2018. 3. 2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5. 25. 중소기업은행에 95,944,92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중 108,590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9원이다.

다. 피고들의 관계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1) 피고들은 2000. 6.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호협306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8. 7.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2.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A은 2018. 4. 4. 피고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2018. 4. 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위 2)항과 같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당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75,12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44,2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5,836,368원(= 대위변제금 95,836,339원+ 확정 지연손해금 29원) 및 그 중 95,836,33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8.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에 위 증여의 원상회복으로 피고 B 명의로 매쳐진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서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 B에게는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미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며,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은 2000. 6. 16. 피고 A과 혼인하여 2018. 7. 10. 협의이혼에 이를 때까지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 B은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면서 화성시 E에서 근무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B이 피고 A과 혼인한 이후 약 12년이 지나서 비로소 취득한 것이 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실제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증여 이후 현재까지 피고 B이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으며,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8. 10. 4.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③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약 2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75,120,000원, 피담보채무 원금은 152,357,331원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4,200,000원, 피담보채무 원금은 34,000,000원이다. 결국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취득한 수익액은 16,821,334원[(220,000,000원 - 152,357,331원 - 34,000,000원) × 1/2] 가량에 불과하다.

④ 이 사건 증여는 피고들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약 3개월 이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속려기간까지 감안하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 피고 A의 사업실패로 피고들의 혼인생활이 평탄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미성년 자녀들을 피고 B이 양육하기로 하는 등이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요소가 참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유영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640.3915㎡
2층	636.6415㎡
3층	636.6415㎡
4층	636.6415㎡
5층	636.6415㎡
6층	636.6415㎡
7층	636.6415㎡
8층	636.6415㎡
9층	554.3252㎡
10층	554.3252㎡
11층	554.3252㎡
12층	554.3252㎡
13층	554.3252㎡
14층	445.6612㎡
15층	445.661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3.870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화성시

대 31496.2㎡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1. 31496.2분의 45.728. 끝.